

I.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FAQ

Q1. 무인비행장치 장만 후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절차는?

| 비행 절차* |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 | | 담당기관 |
|------------|-----|--|-----------------|----------------|-----------------|-----------|-----------------------|
| | | 250g이하 | 250g초과 2kg이하 | 2kg초과 7kg이하 | 7kg초과 25kg이하 | 25kg초과 | |
| 장치** 신고 | 비사업 | X | X | O | O | O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사업 | O | O | O | O | O | '21.1.1시행 |
| 사업등록 | | O | O | O | O | O | 지방항공청 |
| 안전성인증 | | X | X | X | X | O | 항공안전기술원 |
| 조종자증명 |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 한국교통안전공단 '21.3.1시행 |
| 비행승인*** | | △ | △ | △ | △ | O |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
| 항공촬영승인 | | O | O | O | O | O | 국방부 |
| 비행 | |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은 하단 FAQ 확인) | | | | | |

* 상기 기준은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변경사항: 자체중량 12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21년 시행)

***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승인 필요 (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승인 불필요)

Q2. 신고, 비행승인, 사업등록, 안전성인증검사, 항공사진촬영 허가 등 담당기관

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942~48)

A. 안전성인증검사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A. 조종자증명 : 한국교통안전공단(031-645-2103~4)

A. 사업등록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8),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2)

A. 항공사진촬영허가 : 국방부 보안정책과(02-748-2344)

A. 특별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58),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52),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5)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 구 분 | 연락처 |
|---|----------------------------|
| 항공 사진촬영 총괄: 국방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 |
| 서울특별시 | (02)524-3345 |
| 강원도(화천군, 춘천시) | (033)249-6066 |
| 강원도(인제군, 양구군) | (033)461-5102 교환 : 2212 |
| 강원도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읍, 죽왕면) | (033)639-6229 |
| 강원도 고성군(토성면), 속초시, 양양군 (양양읍·강현면) | (033)671-6661 |
| 강원도 양양군(손양면·서면·현북면·현남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033)571-6214 |
| 강원도(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 (033)741-6204 |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062)260-6204 |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042)829-6205 |
| 전라북도 | (063)640-9222 |
| 충청북도 | (043)835-6205 |
|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양산시, 거제시 중 장목면 제외) | (055)259-6205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울릉도, 독도, 경주시 양북면제외) | (053)320-6204~5 |
| 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동 제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051)704-1686 |
| 파주시, 고양시 | (031)964-9680 교환 : 2213 |
| 포천시(내촌면), 가평군(가평읍, 북면), 남양주시(진접읍, 오남읍, 수동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제외)한 전지역) | (031)531-0555 교환 : 2215 |
| 포천시(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 (031)543-6994 |
| 양주시(마전동, 광사동, 만송동, 삼송동, 고읍동, 산북동, 율정동, 회암동) | (031)530-7660~1 |
| 양주시(그외 지역),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지역), 포천시(신북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가평군(조종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서동면), 여주시(북내면, 천송동, 강천면, 대신면, 오학동, 신록사), 의정부시 | (031)640-2215 |
| 김포시(양촌면, 대곶면), 부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중구 중산동 매도, 중구 무의동, 서구 원창동 | (032)510-9216 |

| 구 분 | 연락처 |
|---|---------------|
| 세어도 제외) | |
|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 (031)290-9209 |
|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여주시(가남읍, 점동면, 능서리,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여흥동, 중앙동, 연라동, 우만동, 상거동, 월송동, 연양동) | (031)329-6220 |
| 포항시, 경주시(양북면), 간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 (054)290-3222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
| 인천, 경기 서부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32)740-2157~8 | |
| 서울, 경기 동부 (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가평, 양평, 의정부, 남양주) | 김포항공 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 |
| 충청남북도 |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2 | |
|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 | (063)471-5820 | |
| 강원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양양공항출장소 | (033)670-7206 | |
| 강원 영서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51)974-2153 | |
| 제주도(정석비행장 관제권 제외)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064)797-1745 | |
| 제주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정석비행장 | (064)780-0475 | |
| 군 관할 관제권 (공군) | 광주 | 광주기지 | (062)940-1111 |
| | 서울 | 서울기지 | (031)720-3232 |
| | 김해 | 김해기지 | (051)979-2306 |
| | 원주 | 원주기지 | (033)730-4221~2 |
| | 수원 | 수원기지 | (031)220-1014~5 |
| | 대구 | 대구기지 | (053)989-3203~4 |
| | 예천 | 예천기지 | (054)650-4722 |
| | 청주 | 청주기지 | (043)200-2111~2 |

| 구 분 | | 관할기관 | 연락처 |
|----------------------|---|------------------------------------|--------------------------------|
| | 강릉 | 강릉기지 | (033)649-2021~2 |
| | 충주 | 충원기지 | (043)849-3084~5 |
| | 해미 | 서산기지 | (041)689-2020~3 |
| | 사천 | 사천기지 | (055)850-3111~4 |
| | 성무 | 성무기지 | (043)290-5230 |
| 군 관할 관제권 (해군) | 포항 | 포항기지 | (054)290-6324 |
| | 목포 | 목포기지 | (061)263-4330~1 |
| | 진해 | 진해기지 | (055)549-4231~2 |
| | 포승 | 2함대사령부 | (031)685-4336 |
| 군 관할 관제권 (육군) | 이천/논산/속초 |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 (031)644-3705~6 |
| | [군 비행장 교통구역] 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 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 | | |
| 군 관할 관제권 (미공군) | 오산 | 오산기지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
| | 군산 | 군산기지 | (063)470-4422 |
| 군 관할 관제권 (미육군) | 평택 | 평택기지 | (0503)355-2497 (문의 후 신청) |
|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 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 (02)524-3345~6 |
| | P518, P518E/W (휴전선 지역, NLL 일대) |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 (02)748-3294 |
| | P61A (고리/새울원전) | 합동참모본부 (공중중심작전과) 02-748-3435 | (051)726-2051 (052)715-2762 |
| | P62A (월성원전) | | (054)779-2902 |
| | P63A (한빛원전) | | (061)357-2823 |
| | P64A (한울원전) | | (054)785-1061 |
| | P65A (한국원자력연구원) | | (042)868-8811 |
| | P61B (고리/새울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51)974-2153 |
| | P62B (월성원전) | | |
| | P63B (한빛원전) | | |
| | P64B (한울원전) | | |
| | P65B |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2 |

|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통제구역 (비행제한구역) | R75 (수도권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 (02)524-3345~6 |
| | 공군 사격장 | 공군작전사령부 | (031)669-3014 /7095 |
| | 육군 사격장 | 육군본부 | (042)550-3321 |
| | 해군 사격장 | 해군작전사령부 | (051)679-3116 |
| | 해병대 사격장 | 해병대사령부 | (031)8012-3724 |
| 주의구역 | 군 작전구역 |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 (031)669-7095 |
| | 위험구역 | | |
| | 경계구역 | | |

Q3. 장치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A.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

* 별첨 1의 별지 1 : 신고서 서식

Q4. 신청서 소유주란에 법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A. 해당법인의 설립일을 기재

Q5. 신청서 내 용도란에 영리, 비영리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될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영리로 신고를 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장치의 경우 비영리로 신고 (비영리로 신고한 후 해당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쓸 경우 영리로 변경·이전 신고 필요)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1. **항공기대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용 대여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
 -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4) 조종교육
 -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1)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가.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나. 경량항공기
다. 초경량비행장치
-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Q6. 신규신고 시 제출서류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 A1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등 포함),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매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 A2. **해당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자필서명이 들어간 소유확인서 제출

*** 별첨 2 : 소유확인서 서식**

Q7. 초경량비행장치 신청서 내용 중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제작사에서 제작번호를 발급하는 기체의 경우 제작사에 확인하여 기재
- A. 자체제작일 경우, 제작사(개인)가 직접 모델명과 제작번호를 부여하여 자체 관리

Q8.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의 개념

A.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

* 장비는 비행과 관련없고 탈부착 및 적재 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A.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

Q9.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동일한 기체는 무엇인가요?

A. 제작사의 기준에 따라서, 설계상 추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없거나 또는 추가 적재를 권장하지 않는 운영상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기체들은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을 구분하지 않음.

Q10.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은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측면사진을 촬영(가로 15cm, 세로 10cm)의 하여 제출하되, 인터넷에 있는 동일기체 사진이 아닌, **소유한 기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출**

Q11.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A.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를 참고하여 작성,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 사진첨부 가능

<제원 및 성능표 예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18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서식>

| | | | | |
|------------------|----------|--|---------------|--|
| 주 요 제 원 | 최고속도 | | 엔진형식 | |
| | 순항속도 | | 자체중량* | |
| | 실속속도 | | 최대이륙중량* | |
| | 길이×폭×높이* | | 연료중량 | |
| | 탑승인원 | | 카메라 등 탑재여부 | |

*최고속도 : 해당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재

*순항속도 : 연속적인 정상비행을 계속할 때 사용되는 속도

*실속속도 : 실속(급격히 양력을 상실하여 비행을 유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

*탑승인원 : 해당장치의 탑승인원을 기재

*엔진형식 : 해당기체에 사용된 엔진형식 기재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 해당 기체의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을 기재

*연료중량 : 해당제원이 있는 경우 기재

*카메라 등 탑재여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길이×폭×높이는 가급적 작성하며, 제원표상에 이를 확인
하지 못할 경우 보완요구 될 수 있음

※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표에 해당 제원이 없는 경우, 해당내용 미기재

Q12. 보관처가 무엇인가요?

A. "보관처"란 기체를 비행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기체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함

Q13. 변경사유는 무엇인가요?

A. "변경사유"란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의 변경을 의미함
※ 법적 변경사유는 아니나,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정된 경우 원스탑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이전으로 신고

Q14. 이전사유는 무엇인가요?

A. "이전사유"란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함

Q15.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A.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함

-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 법적 말소사유는 아니나, 단순 오타로 인하여 기체 제원과 관련된 사항이 수정 필요한 경우 해당 기체를 말소하여 신규로 재신청하며 이때 소유자는 변경된 신고번호로 기체에 부착하여 운영

Q16. 변경 및 이전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변경 및 이전신고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드론원스탑시스템에서 변경·이전 신청

▶ **변경신고 증빙서류 예시(아래 예시된 서류 중 해당내용 증명되는 서류 첨부)**

* 해당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기타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사유 | 증빙서류 예시 | 발급방법 |
|----------------|--------------------------------------|--------------------------------|
| 비행장치의 용도변경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소유자성명 변경(개명) | -기본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시/구/읍/면 |
| |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정부24, 동/시/구/읍/면 |
|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 -정부24, 동/시/구/읍/면 - |
| 사업자 명칭 또는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등기소 |
| |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에 해당내역 명시)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
| 보관처 변경 | -보관처 변경 전 주소, 사진과 보관처 변경 후 주소, 사진 | - |
| 소유권 이전 | -매매계약서 -소유증빙확인서(별첨2) 등 | - |

Q17.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드론원스탑시(무인비행장치)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다시 다운로드 가능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 <https://drone.onestop.go.kr>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처리완료된 신청번호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

A2.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별도 재교부 신청서(별첨1>별지3)를 작성하여 발급신청(e-mail 또는 Fax)

Q18. 최대이륙중량 2kg이하인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보유중일 경우, 신고여부?

A.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

Q19.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1.1.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기체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는 미신고대상 기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하여 **2021년 6월 30일 까지 신고필요**

Q2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변경, 이전, 말소 포함)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A.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A.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21.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A.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함

- 현재 드론원스탑시스템 모바일웹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민원신청현황에서 신고증명서 확인 가능(단,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 '21년도에 드론원스탑 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 예정

Q22.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A.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

Q23. 신고번호는 어느곳에 표시해야 하나요?

A. 신고번호 표시는 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및 별첨1의 별표1.2 참조

* **별첨1의 별표1.2 : 신고번호 표시 위치 및 그 예시**

Q24. 신고번호 표시 방법은 ?

A. 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및 **별첨1의 별표3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를 참고하여, 신고번호를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선명하게 표시(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구 분 | | 규 격 | 비 고 |
|-------|-----------------------|----------------------|------------------------------------|
| 가로세로비 | | 2 : 3의 비율 |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
| 세로 길이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20CM 이상 | |
|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15CM 이상 |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 이상 |
| 선의 굵기 | | 세로길이의 1/6 | |
| 간 격 | |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별첨3) 신고번호 출력 샘플을 참고하여 표시**

Q25.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사방과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26.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30일 이내, 관공서의 경우 3개월까지 신청가능)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27.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28.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주거지역, 상업지역,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 ·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 위반하여 비행 금지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 금지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금지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Q29. 비행승인 대상 및 신청방법은 ?

A.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은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비행승인 신청>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

- 비행승인 신청기간은 최대 6개월 까지 가능

- **처리기한은 3일(군 관련 구역은 5일이 소요될 수 있음)**

Q30.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A.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①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A. 특별비행승인 절차

1.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해 신청

2. 지방항공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요청

3.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통보 및 납부확인, 안전성검사(현장점검) 후 지방항공청으로 결과서 제출

4. 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승인 후 기관 및 업체로 증명서 발송

5. 기관 및 업체는 증명서 수령 후 특별비행승인 수행 가능

6. 민원처리 기한 : 평일기준 30일

II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관련 FAQ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Q1. 학과시험은 어디에서 치르게 되나요?

A. 학과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1.1.1부터 기존 4개소(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9개소(서울, 광주, 대전, 부산, 화성, 춘천, 전주, 대구, 제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다른 종의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따로 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과시험은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됩니다.

Q3. 1종을 따면 2종이나 3종 자격증명을 별도로 취득하여 하나요?

A. 아닙니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여도 됩니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Q4. 학과시험을 21년 3월 1일 이전에 봐서 합격을 했는데 다시 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과시험 유효기간(2년)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취득을 원하는 기체 종류에 따라 학과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Q5. 4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1.3.1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포털을 통해 신청·수강 가능 하며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Q6. 1종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어떤 기체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A. 응시하는 종별 무게기준에 해당하는 기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체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 |
|------------------|----------------------|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

| |
|---|
| Q7.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기체의 종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지원표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서류에 기체신고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종별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 Q8. 2종 실기시험은 약식이라고 하는데 약식 실기시험은 무엇인가요? |
| A. 약식 실기시험은 2종 실기시험으로써 1종 실기시험 평가항목을 2종에 맞게 축소·보완(약식)하여 평가가 진행 되는 것을 말합니다. |
| Q9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
| A. 네. 신고된 기체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영리/비영리 관계없음) |
| Q10. 실기시험은 어디서 치르게 되나요? |
| A. 무인멀티콥터 및 무인헬리콥터의 경우 상설실기시험장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인비행기의 경우 응시자가 요청한 일부 장소에서 시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 Q11.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운영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A. '21년에 시행되는 실기시험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또는 사설교육기관)에 상관없이 사전에 응시자가 협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공단에서 제공한 상설실기시험장에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실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비행경력증명서, 지원표, 신고증명서, 신체검사증명서, 보험 관련서류 등) 및 기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응시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 Q12. 코로나로 인해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방안이 있나요? |
| A. 학과시험은 '21년부터 전국 4개소(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9개소(서울, 대전, 광주, 부산, 화성, 춘천, 전주, 대구, 제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실기시험은 상설실기시험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학과시험 응시인원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 Q13. 현재 드론조종자 실기시험 응시대기자가 많은데, '21.3.1까지 실기시험 대기자를 위한 해소방안이 있나요? |
| A. 실기시험 대기자 해소를 위해 실기시험 장소확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수료한사람(사설교육기관의 경우 응시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21년 12월 31일 까지 기존에 교육받았던 기체로 실기 시험에 응시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교육기관 준비사항

Q14. 현재 전문교육기관은 몇 종으로 승인받는건가요?

A. 기존 전문교육기관은 '21년 3월 1일 이후 1종 전문교육기관으로 유지되지만 1종 기체를 보유해야합니다.

Q15. 1종 이외에 2종 및 3종 전문교육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은 1종~3종 모두 교육 가능한 기관입니다.

Q16. 전문교육기관은 무조건 1종 기체를 보유하여야 하나요?

A.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종~3종 모두 교육이 가능해야하므로 자격차등화가 시행되는 '21.3.1.까지 1종~3종의 기체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Q17. 전문교육기관 인가정원은 1종~4종별로 구분해서 새롭게 신청해야하나요?

A. 인가정원은 기존에 인가받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인가된 정원 내에서 교육생의 교육신청에 따라 1~3종까지 구분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

Q18. 전문교육기관 비행장 지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전문교육기관 비행장 규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종~3종 동일)

Q19. 무인동력비행장치 종류별 전문교육기관 훈련기준 변경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문교육기관 훈련기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 학과교육 | 모의 비행 교육 | 실기교육 | | |
|-------------------------|----|-------------------------------|----------|------|------|------|
| | | | | 교관동반 | 단독 | 합계 |
| 무인 비행기 | 1종 | 20시간 | 20시간 | 10시간 | 10시간 | 20시간 |
| | 2종 | 항공법규(2) 항공기상(2) 항공역학(5) | 10시간 | 5시간 | 5시간 | 10시간 |
| | 3종 | 비행운용(11) | 6시간 | 3시간 | 3시간 | 6시간 |
| 무인 멀티콥터 · 무인 헬리콥터 | 1종 | 20시간 | 20시간 | 8시간 | 12시간 | 20시간 |
| | 2종 | 항공법규(2) 항공기상(2) 항공역학(5) | 10시간 | 4시간 | 6시간 | 10시간 |
| | 3종 | 비행운용(11) | 6시간 | 2시간 | 4시간 | 6시간 |

Q20. 전문교육기관 종별 교육종 교육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상위 자격 교육에서 하위자격 교육으로 변경(예:1종→2종)은 가능하지만 하위자격 교육종 상위자격 교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학과시험의 경우 1종~3종이 모두 동일하므로 재교육없이 실기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21. 지인 중 지도조종자가 있는 경우 1대1 교육으로 비행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행경력증명서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관에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타사항(기체, 비행시간 산정 등) 및 경과조치

Q22.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체는 새롭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A. 기존에 보유한 기체 중 이미 신고된 기체는 새롭게 기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기체 중 신고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및 비사업용 모두 해당)

Q23.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체는 변경되면 몇 종에 해당하나요?

A.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체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종이 분류될 예정입니다.

| 기체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 |
|------------------|----------------------|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

Q24. `2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실기교육은 인정 되나요?

`21. 3. 1. 이전에 실기교육을 통해 쌓은 비행시간은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25. 교육기관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자는 입과일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해당 법규 적용은 `21년 3월 1일이며 경과조치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1년 3월 1일 이전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사설교육기관의 경우 응시자격을 신청한 사람)이 경과조치 대상입니다.

Q26.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27. 기존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21.3.1 이후에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 됩니다.

취미, 레저용 운영자

Q28.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A. 네. `21.3.1 부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Q29. 취미, 레저용 운영자를 위한 경과조치는 없나요?

A. `21년 1월 1일 ~ 31일 까지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21년 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학과,실기)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 시험에 응시하신 후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경과조치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 종류별로 교육을 이수하신 후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Q30. 동호회나 비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에 속한 경우 비행경력을 인정해주나요?

A. 아닙니다. 동호회 단체별로 비행경력관리 기준 등이 달라 일괄적인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21년 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시험(학과·실기)을 운영하여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31. 임시 실기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A. 2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기체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며 시행계획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32. 본인 기체로 시험을 합격한 후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나요?

A. 임시 실기시험 신청일까지 본인의 소유를 증빙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33. `21.3.1 이후에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되면 불법비행인가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A. `21년 1월 1일 ~ 31일 까지 신청한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해 임시실기시험 운영 기간(`21년 2월 1일 ~ 12월 31일)내 비행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